

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2.08.09.>, <3차 개정 2025.04.26.>, <4차 개정 2025.11.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성평등을 목적으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 등의 행위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6.02.>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폭력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 및 성폭력, 그 밖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인 또는 기타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신설 2024.12.24.>
10. “참고인”이란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4.>
11. “관련 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12.24.>
12.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직원, 학생

4-2-34 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24.>

13.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4.12.24.>

가.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24.12.24.>

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신설 2024.12.24.>

다.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24.12.24.>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건 당사자 모두가 구성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단,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통제범위 내에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구성원의 신분이 아닐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제 4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신고되었음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조사원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04.26.>

⑤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본교 구성원은 사건의 내용,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센터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2.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교내외 타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센터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부모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5 조 (불이익 및 부당한 처우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의 피해자, 신고인 및 사건 조사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임용, 승진, 급여, 성적 등에 관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비

방 기타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인권침해 등의 사건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피신고인 혹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2 장 인권센터의 조직

제 1 절 조직구조 및 업무

[중전 제1의절에서 이동 2023.06.02.][제목개정 2023.06.02]

제 6 조 (조직) ① 우리 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이하 ‘각 캠퍼스’ 라 한다)에 각각 인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부조직으로 각각 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② 센터에는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2.24., 2025.04.26>

③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과 행정직원을 두며, 조교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4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7 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해결의 경험이 있으며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전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연1회 당해연도 연간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④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권상담소장(이하 ‘상담소장’ 이라 한다), 학생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⑤ 센터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비용은 교내 예산 지침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제5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8 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소의 운영
2. 인권보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3.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24.>
4. 공익신고 접수, 처리부서 결정 및 신고자등 보호

[본조신설 2023.06.02][제6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 절 인권상담소

제 9 조 (상담소의 조직) 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 전문연구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6.02.>

② 상담소는 신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생상담센터로부터 심리상담 및 기타의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제6조에서 이동 2023.06.02][제7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10 조 (상담소장) ① 상담소장은 인권문제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소장은 상담소의 업무를 집행하며, 인권침해 등의 행위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구체조치를 건의한다. <개정 2024.12.24.>

③ 상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는 센터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전문개정 2023.06.02][제7조에서 이동 2023.06.02][제8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11 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06.02.>

1.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심리적·법적·의료적 구체 <개정 2023.06.02., 2024.12.24>

2. 인권침해 등의 행위의 유형과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 <개정 2023.06.02., 2024.12.24>

3.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의견표명 <개정 2023.06.02, 2024.12.24>

[제8조에서 이동 2023.06.02][제9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 절 심의위원회

[본질신설 2024.12.24.]

제 12 조 (설치)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04.26>

[본조신설 2024.12.24.]

제 13 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연구원은 당연직 간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과 조사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4.26.>

⑤ 심의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14 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15 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의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3. 직위해제의 건의 또는 징계 발의의 요구
4. 재심의 회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중징계 및 가중조치
5. 사건의 중재 또는 해결을 위한 조치 등 상담소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25.04.26>

[본조신설 2024.12.24.]

제 4 절 운영위원회

[중전 제3의절에서 이동 2024.12.24.]

제 16 조 (설치)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② 삭제 <2024.12.24>

[제9조에서 이동 2023.06.02][제10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17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연구원은 당연직 간사로 한다. <개정 2023.06.02.>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 상담소장, 대학원장, 법무감사실장, 각 캠퍼스의 교무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2명 이상의 교수, 2명 이상의 직원, 2명 이상의 학생(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6.02, 2025.11.15>

④ 위촉된 위원의 남녀 비율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3.06.02.>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3.06.02][제11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18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6.02][제12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19 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의 운영 및 평가 <개정 2023.06.02.>

2. 학내의 인권보호 및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개정 2023.06.02.>

3. 학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우리 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23.06.02., 2024.12.24>

5.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상담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안 <개정 2023.06.0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예산과 결산

3.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제안 <개정 2024.12.24.>

4.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상담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안 <개정 2023.06.02., 2024.12.24>

5. 공익신고 처리부서의 결정 <개정 2024.12.24>

[제12조에서 이동 2023.06.02][제13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 장 조사와 구제

제 20 조 (신고 및 철회) ①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04.26.>

③ 센터 이외의 학내 부서 또는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센터의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장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04.26>

④ 외부 기관에 신고되어 센터로 이첩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은 센터에 신고된 사건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센터로 이첩된 날을 신고 접수일로 본다.

⑤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⑥ 신고인은 사건처리 결과를 최종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13조에서 이동 2023.06.02][제14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0 조의2 (통보 및 신고의무) ① 센터장은 신고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 사건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21 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소장과 협의하여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1. 신고인이 제20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3.06.02., 2024.12.24>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06.02., 2024.12.24>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4조에서 이동 2023.06.02][제15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2 조 (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상담소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신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06.02>

[제15조에서 이동 2023.06.02][제16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3 조 (상담소장의 조사 및 처리) ① 상담소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② 조사가 개시되면 상담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③ 상담소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④ 상담소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06.02.>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⑥ 상담소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⑦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제16조에서 이동 2023.06.02][제목개정 2023.06.02][제17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4 조 (성실의무) ① 당사자 및 참고인은 인권센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고인·피해자 등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25 조 (조사의 방법) ①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1.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녹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이와 관련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③ 상담소의 조사·심의 및 징계요청은 제31조 내지 제3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제17조에서 이동 2023.06.02][제18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6 조 (화해 및 합의 의사 확인) ①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 화해를 원할 경우, 센터는 기초사실관계 확인 후 화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센터 및 센터에서 일임한 자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04.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④ 센터장은 당사자간의 화해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화해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4.]

제 27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소장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② 위원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개정 2024.12.24.>
④ 센터장은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부전문가 1인 또는 2인을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⑤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따른 행정업무는 상담소의 전문연구원과 조사원이 담당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제18조에서 이동 2023.06.02][제19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8 조 (조사위원의 임기 및 결원)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6.02.>
② 조사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19조에서 이동 2023.06.02][제20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29 조 (조사위원회의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개정 2023.06.02., 2024.12.24>
2. 해당 사건의 해결 방안 및 가해자의 징계와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개정 2023.06.02.>
3. 기타 피해 회복 및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시
4.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상담소장에 대한 보고 <개정 2023.06.02>
[제20조에서 이동 2023.06.02][제21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0 조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②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06.02.>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06.02][제목개정 2023.06.02][제22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1 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에는 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2025.04.26>

④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이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하여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⑤ 센터장과 상담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원은 당연직으로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⑥ 조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⑦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담소장에게 보고하고, 상담소장은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며, 센터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제22조에서 이동 2023.06.02][제목개정 2023.06.02][제23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2 조 (재심의) ①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센터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서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센터장은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다음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재심의가 개시되면 그 절차를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 ③ 재심의가 결정되면 센터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새로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 ④ 새로운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및 심의 등은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24>

[제23조에서 이동 2023.06.02][제24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3 조 (신고의 기각) ① 상담소장으로부터 조사결과와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2.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06.02][제25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4 조 (조사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06.02][제26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5 조 (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06.02][제29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6 조 (징계의 요청) ① 제25조제3항 및 제31조제8항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06.02, 2024.12.24., 2025.04.26>

-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당사자가 제22조 및 제35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06.02., 2024.12.24>

4-2-34 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상담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여 그 제3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06.02.>

② 센터장은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요청 이전에도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2025.04.26>

③ 심의위원회는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의 병과를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권자는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신설 2024.12.24.>
2. 사회봉사 프로그램 <신설 2024.12.24.>
3. 금전적 피해보상 <신설 2024.12.24.>
4. 기타 필요한 조치 <신설 2024.12.24.>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 신고인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 누설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동조자 또는 누설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⑤ 센터장은 가해자가 외부인일 때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 접촉하여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제29조에서 이동 2023.06.02][제30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7 조 (징계) 징계의 절차는 우리 대학교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징계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12.24.>

1. 피신고인이 ‘교수’ 인 경우는 교무처로 이첩하여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및 ‘복무규정’ 에 따른다.
2. 피신고인이 ‘직원’ 인 경우는 총무처로 이첩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과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및 ‘복무규정’ 에 따른다.
3. 피신고인이 ‘대학원생’ 인 경우는 대학원으로 이첩하여 ‘대학원 학칙’ 에 따른다.
4. 피신고인이 ‘학생’ 인 경우는 학생처로 이첩하여 ‘학생상벌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04.26>

[제30조에서 이동 2023.06.02][제31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8 조 (가중징계 및 가중조치)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에게 가중징계 및 가중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2024.12.24., 2025.04.26>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인권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개정 2024.12.24.>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
- [제31조에서 이동 2023.06.02][제32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39 조 (기록 및 자료보존) ① 상담소는 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② 상담소는 사건의 진위여부 조사, 면담 및 처리과정 등 모든 절차의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한다. <개정 2023.06.02>

[제32조에서 이동 2023.06.02][제33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40 조 (당사자의 권리 및 피해자의 보호) ① 당사자는 상담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 또는 동반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06.02., 2025.04.26>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제33조에서 이동 2023.06.02][제34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41 조 (교육 훈련의 지원) 학교는 센터 구성원이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정 2025.04.26>

[본조신설 2024.12.24.]

제 4 장 보칙

제 42 조 (운영 관련 세부사항) 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제36조에서 이동 2023.06.02][제37조에서 이동 2024.12.24.]

제 43 조 (관련 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6>

[제37조에서 이동 2023.06.02][제38조에서 이동 2024.12.24.]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舊 인권센터 규정, 舊

4-2-34 인권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3.06.02.]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4.12.24.]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5.04.26]